

의안번호	2202402
의 퇴 인	최형두 의원
회 답 일	2024. 07. 09.
추계번호	24A109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의2(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1. 「국가재정법」 별표 21)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u>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u>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2조의2(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참고자료 1] 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현행법¹⁾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²⁾에 대한 지원의 재원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 등을 지원 근거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의 재원이 되는 기금 종류의 확대에 따른 신규 사업 예산이 편성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융자 사업’ 예산 90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2024년도에는 45개 기업에게 평균 2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임³⁾

1) 법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시행령 제39조(국가전략산업등 지원 특별회계등)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전략산업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금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의미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반도체 분야 4개 산업, 디스플레이 분야 5개 산업, 이차전지 분야 4개 산업, 바이오 분야 2개 산업 등 총 15개 산업임(2024.6. 기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이라 한다)이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2024년도 신규 사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5076-320)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비용인데,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지원 대상 기업의 수, 지원 범위 및 지원 비율, 지원비 단가 등이 필요하나, 현재 이에 관한 계획이 부재하여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은 반도체 2개, 이차전지 4개, 디스플레이 1개, 바이오 5개 등 총 12개⁴⁾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지원중⁵⁾
 - * [참고자료 1]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
 - * [참고자료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12개) 현황
[참고자료 2-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현황
 - * [참고자료 3] 현행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현황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 분야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필요한 R&D 자금을 융자 지원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4) [참고자료 2] 참조

5) [참고자료 3] 참조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지수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50	zisu37@nabo.go.kr

[참고자료 1]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삭제<2021.12.21.>
15. 기술보증기금법
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 남북협력기금법
1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21. 농어업재해보험법
2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23. 문화예술진흥법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5. 보훈기금법
26. 복권 및 복권기금법
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무역보험법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2. 신용보증기금법
3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34. 양곡관리법
3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36. 양성평등기본법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8. 예금자보호법(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한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0. 외국환거래법
41. 원자력 진흥법
4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3. 임금채권보장법
4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6. 전기사업법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8. 주택도시기금법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5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51. 청소년기본법
52. 축산법
53. 삭제<2010.12.27>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5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5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1. 삭제<2009.3.5.>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64. 석면피해구제법
65.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66. 국유재산법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68. 공탁법
6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7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참고자료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12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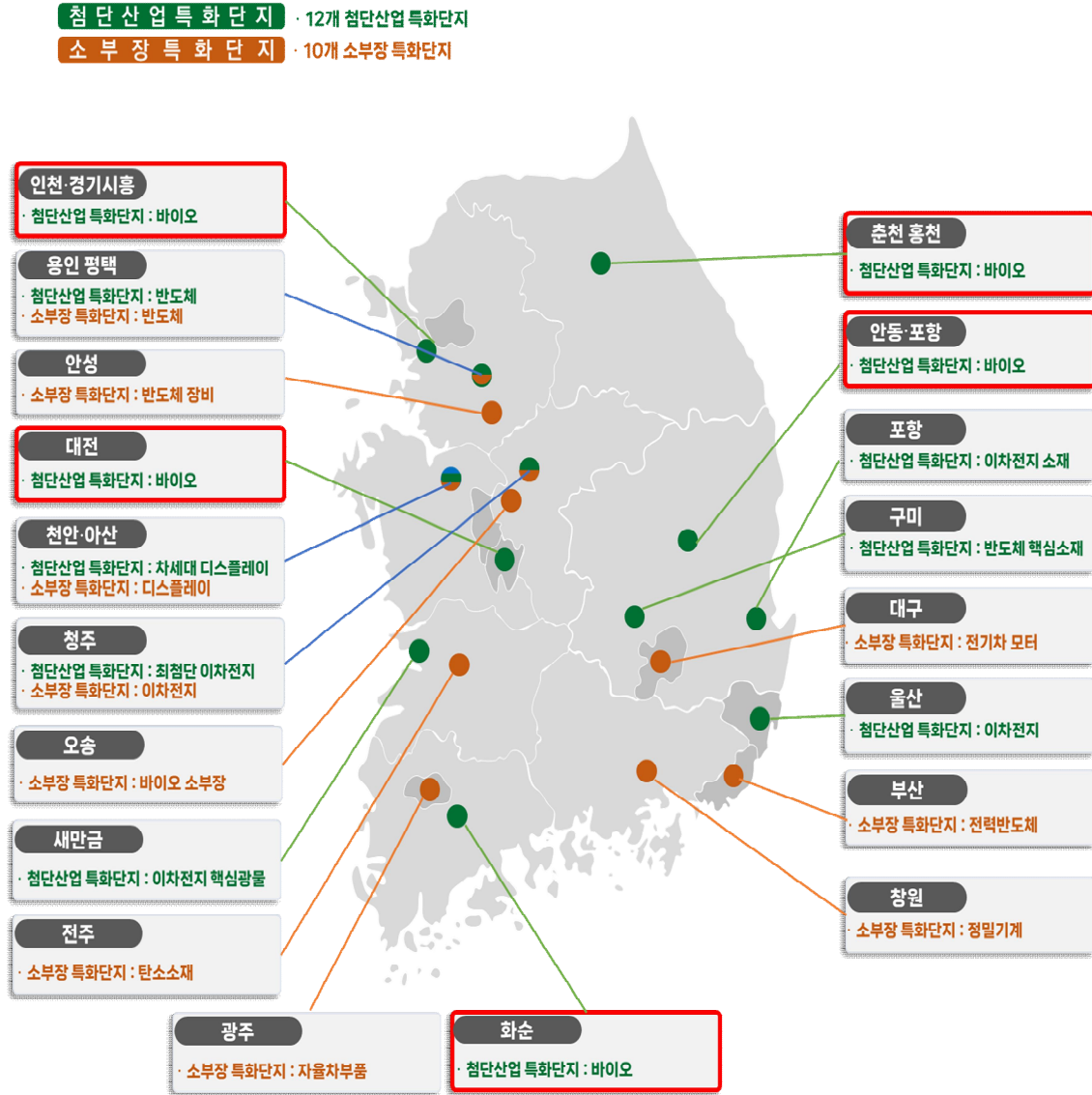
분야	지역	주요 내용	민간투자(기간)
반도체	용인·평택 ¹⁾	메모리 세계1위 수성, 시스템 점유율 10%로 확대	562.0조원(~'42)
	구미	12인치 웨이퍼 글로벌 리딩그룹 도약	4.7조원(~'26)
이차전지	청주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	4.2조원(~'26)
	포항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年 70만톤 이상)	12.1조원(~'27)
	새만금	핵심광물가공(전구체 등)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6.4조원(~'27)
	울산	이차전지 포트폴리오(LFP, 전고체 등) 다변화 거점	7.4조원(~'30)
디스플레이	천안·아산	OLED 초격차 확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17.2조원(~'26)
바이오	인천·경기 (시흥)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25.7조원(~'35)
	대전(유성)	혁신신약 R&D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	6.6조원(~'37)
	강원 (춘천·홍천)	AI 기반 신약개발 및 중소형 CDMO(위탁개발생산) 거점	2.7조원(~'40)
	전남 (화순)	국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백신생산 거점, 글로벌 백신허브 도약	1.2조원(~'33)
	경북 (안동·포항)		6.3조원(~'33)
합 계			650조원(~'42)

주: 1)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정된 용인·평택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 현재 가동 중인 인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7.20.), “7개 특화단지에 민간투자 총 614조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6.27.), “5개 바이오 특화단지를 통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 도약”

[참고자료 2-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6.27.), “5개 바이오 특화단지를 통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

[참고자료3] 현행법 제20조제1항제1호6)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코드) -내역사업명 ¹⁾	사업 개요	2024년도 (내역사업 예산 ¹⁾)
1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연대협력지원사업 (3171-419)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첨단전략특화단지 생태계 조성 및 연대협력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인력양성 종합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내역 사업) 첨단전략기술 구현을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산업 제품의 신뢰성, 양산성능, 인증 사업화 등 실증 지원	4,500 (900)
2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3171-433)	·구미국가산단 1~3공단을 연결하는 노후된 기존 교량(구미대교)을 대체하고 산단 간 연결성 강화를 위해 신설 교량 건설에 국비 지원	20,000
3	포항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원 (3171-425)	·민간의 투자(FAB 등 생산시설 신·증설) 활성화 및 적기 준공 지원 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 내 용수, 폐수 등 핵심 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항 영일만 산단 내 용수공급시설 구축	15,406
4	울산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지원 (3171-43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 내 용수, 폐수 등 핵심 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울산하이테크밸리산단 내) 전력공급시설 구축 지원	3,750
5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 호기반조성 (3133-307)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충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운영 및 특화단지 기반확충, 세액공제심의 등 기반 조성을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확충 내역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필수적인 산단 기반시설의 원활한 조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적기 투자 지원, 제조능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1,608 (200)

주: 1) 세부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경우 내역사업 단위까지 작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